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 · 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4. 17.] [환경부고시 제2019-71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 · 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재질 · 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 2에 따른 재질 · 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 · 구조개선 평가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9-71호,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 기본 원칙

가.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을 설정

□ 평가 기준

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재활용 어려움)”로 구분

나. 가목의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

다. 가목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로 구분

□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 우수)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	--------------------------------

1. 종이팩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투명필름 코팅·차단제 구조	● 알루미늄 첩합 구조 ● 미표백 펄프 사용(백색을 제외한 펄프를 사용한 제품)
마개 및 잡자재		● 분리가 불가능한 1)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1)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분리배출이 어렵거나, 몸체나 마개 및 잡자재 등 재질의 손상 없이 제거가 어려운 경우



## 포장과 법률

### 2. 유리병 포장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다석회 재질</li> <li>● 무색, 갈색, 녹색 색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다석회 이외 재질</li> <li>●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sup>1)</sup></li> </ul>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라벨 또는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라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라벨</li> <li>●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또는 표면코팅</li> <li>● 금속재질</li> </ul>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껑 · 테 일체형 구조 또는 분리 가능한 마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li> <li>● 뚜껑 · 테 분리형 구조</li> <li>●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마개 제외)</li> <li>● 기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li> </ul>

1) 와인병 등으로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 · 갈색이 아닌 색상의 경우도 포함

### 3. 금속캔 포장재(철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 철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땜캔</li> </ul>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에 직접 인쇄</li> </ul>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와 동일한 재질</li> </ul>	

###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 알루미늄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 알루미늄캔</li> </ul>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에 직접 인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에 직접 인쇄</li> </ul>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와 동일한 재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와 동일한 재질</li> </ul>

### 5. 일반 발포합성수지<sup>1)</sup>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색 단일재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재질 구조</li> <li>● 기타 재질과의 첩합 및 조합</li> <li>● 백색 이외의 색상</li> </ul>
라벨, 마개 및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와 동일한 재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체에 직접 인쇄<sup>2)</sup></li> <li>● 몸체와 다른 재질의 라벨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li> <li>● PVC 계열의 재질</li> </ul>

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 · 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 · 복합재질 완충제를 말함.

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6. 폴리스티렌페이퍼 (PS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 백색 단일재질	● 복합재질 구조 ● 기타 재질과의 첩합 및 조합 ● 백색 이외의 색상
라벨, 마개 및잡자재	● 분리가 용이한 라벨 · 마개 · 잡자재 최우수 : 몸체와 동일한 재질 우 수 : 다른 재질의 마개 · 잡자재로서 제거 · 분리 가능한 구조	● 몸체에 직접 인쇄 <sup>1)</sup> ● 몸체와 다른 재질의 라벨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

1)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7. 페트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 단일재질 무색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 ● 단일재질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먹는샘물 · 음료의 경우 녹색도 제외) ● 기타 재질과의 첩합 및 첩합 등 복합재질에 의한 구조
라벨	● 절취선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sup>1)</sup>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최우수 : 비접(점)착식 우수 :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 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sup>2)</sup> 단, 접(점)착제 도포 시 면적 · 양 최소화 <sup>3)</sup>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단, 절취선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제외) <sup>4)</sup> ●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사용
마개 및 잡자재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무색 페트 단일재질 제외) ● 합성수지 이외의 마개 및 잡자재 ● PVC 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 ● 실리콘, 고무, 금속 재질

1) 2열 절취선, 접(점)착제 도포 시 제거 안내 문구 및 가장자리 미도포 등 라벨 형식에 따라 도입 가능한 형태로 분리 용이성 제고(단,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 제외)

2)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

3) 페트병 유형별 가이드라인 별첨

4)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8231;구조 또는 어려운 재질&#8231;구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 단일재질 <sup>1)</sup>	● PVC 계열의 재질
라벨, 마개 및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몸체에 직접 인쇄	● PVC 계열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1) PE · PP용기 포장재의 경우 몸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 포함할 수 있음